

#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
## I. 개요

- **제명**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- **배경**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,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근거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- **목적** 경제·사회·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및 기후·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
- **주요개념** ①지속가능성, ②지속가능발전, ③지속가능발전목표, ④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등  
 ☞ [참고] 국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
  - ① (지속가능성)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·사회·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
  - ② (지속가능발전)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,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
  - ③ (지속가능발전목표) 2015년 국제연합(UN; United Nations)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
  - ④ (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)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
- **의의**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요한 국제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지향점을 제도화

### ● 입법 추진경과 ●

- ▷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최초 제정('07. 8.)
- ▷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('10. 1.) 후 '녹색성장'이 '지속가능발전'의 상위개념으로 다루어지면서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의 역할 축소
  - ※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을 「지속가능발전법」으로 개정('10. 1.)
- ▷ 경제·사회·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
  - ※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(한정애 의원, '20. 12.),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안(김병욱 의원, '21. 5.) 입법안 제시
- ▷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재제정('22. 1.) 및 시행('22. 7.)



## 참고 국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

### • UN 지속가능발전목표(UN SDGs) •

- **배경** 2015년 UN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인류 공동의 목표로서 ‘지속가능발전목표’(SDGs;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 달성을 결의
- **개요** ‘미래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’의 원칙<sup>1)</sup>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체계
- **구성** 17개 목표 아래 169개 세부목표, 232개 지표로 구성
- **목표시기** 2030년(2016~2030년, 15년 단위)
- **의의**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포괄적·적극적으로 해석, 그 이행을 각국의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 공동의 목표·의무로 전환

### •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•

- **배경** UN SDGs와 연계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·환경·경제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K-SDGs 마련
- **개요** ‘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’의 비전 및 ‘사람’, ‘번영’, ‘환경’, ‘평화·협력’ 등 4대 전략 달성을 위한 목표 체계 구성<sup>2)</sup>
- **구성** 17개 목표 아래 119개 세부목표, 236개 지표로 구성
- **목표시기** 2040년(2021~2040년, 20년 단위)
- **의의**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,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·사회·환경 등 전 분야를 균형있게 고려

1) 세계환경개발위원회(WCED;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)의 보고서 ‘우리 공동의 미래’(Our Common Future, 1987) 중 ‘지속가능개발’(Sustainable Development)에 대한 표현으로, 원문은 “i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”. 이를 차용하여 법 제2조 제1호 ‘지속가능성’ 정의

2) ‘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~2040’(관계부처 합동, 2020)에 따른 ‘비전-전략-목표-(세부목표)’ 체계

## 【UN 지속가능발전목표(UN SDGs)-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비교】

UN 지속가능발전목표(UN SDGs)		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	
	1 NO POVERTY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	▶	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
	2 ZERO HUNGER 기아 종식, 식량안보 달성,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	▶	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
	3 GOOD HEALTH AND WELL-BEING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	▶	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
	4 QUALITY EDUCATION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	▶	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
	5 GENDER EQUALITY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	▶	5 성평등 보장
	6 CLEAN WATER AND SANITATION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	▶	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
	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	▶	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
	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지속적·포용적·지속가능한 경제성장,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	▶	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
	9 INDUSTRY,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,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	▶	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
	10 REDUCED INEQUALITIES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	▶	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
	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	▶	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
	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	▶	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
	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	▶	13 기후변화와 대응
	14 LIFE BELOW WATER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, 바다,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	▶	14 해양생태계 보전
	15 LIFE ON LAND 육상생태계 보호·복원·지속가능한 이용 증진,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, 생물다양성 보전	▶	15 육상생태계 보전
	16 PEACE,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, 정의 보장 및 포용적인 제도 구축	▶	16 평화·정의·포용
	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	▶	17 지구촌 협력 강화



## II. 주요내용

### 1 기본원칙

- **기본원칙** 법률의 목적 및 내용의 근간이 되는 7대 기본원칙 명시

- **국제적 지속가능발전목표** 달성을 위해 **국내 이행 강화**를 규정

1. 국제적 규범 및 합의사항의 준수·이행,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노력
2.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및 계획 수립
3. 혁신성장을 통한 기술·지식 생산,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경제체제 구축
4.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 구축
5. 생태학적 기반 보호 및 자원순환·환경보전 촉진
6.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·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·전문가·국민의 참여 보장
7.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

### 2 추진체계

- **기본전략** 정부는 **20년**을 단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·목표, 달성을 위한 전략·원칙 등\*을 담은 **‘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’** 수립

\* 고려사항: ①양질의 일자리, 경제발전, ②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, ③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 및 도시·주거, ④빈곤퇴치, 건강·행복 및 포용적 교육, ⑤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, ⑥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, ⑦생태계 보전과 국토·물 관리, ⑧지속가능한 농수산·해양 및 산림, ⑨국제협력 및 인권·정의·평화 등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**20년** 단위의 **‘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’** 수립

- 각 기본전략은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**5년**마다 **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**

- **추진계획** 중앙행정기관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**5년**마다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**‘중앙추진계획’** 수립·이행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**5년**마다 **‘지방추진계획’** 수립·이행



- **위원회**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**‘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’**를 설치하여 자문 및 정책 심의\*

\* 국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: ①국가기본전략의 수립·변경, ②중앙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이행점검, ③각 추진계획의 협의·조정, ④정책의견 제시, ⑤제·개정 법령 및 행정계획 검토, ⑥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, ⑦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, ⑧이해관계자 협력 및 사회갈등 조정·협치 등

-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소속의 **‘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’**를 설치

※ 단,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 설치 가능

### 3 지속가능발전 시책

- **구성체계**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구성하는 17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5P 분류체계에 따라 4개 시책, 즉 ①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②포용적 사회 구현, ③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, ④이해관계자 협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책의 구체적 방향성 규정

5P	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	시책
<b>번영 (Prosperity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</li> <li>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</li> <li>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</li> <li>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</li> </ul>	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<b>제23조</b>
<b>사람 (People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</li> <li>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</li> <li>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</li> <li>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</li> <li>5 성평등 보장</li> <li>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</li> </ul>	포용적 사회 구현 <b>제24조</b>
<b>환경 (Planet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</li> <li>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</li> <li>13 기후변화와 대응</li> <li>14 해양생태계 보전</li> <li>15 육상생태계 보전</li> </ul>	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<b>제25조</b>
<b>평화(Peace) 협력(Partnership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6 평화·정의·포용</li> <li>17 지구촌 협력 강화</li> </ul>	이해관계자 협력 <b>제26조</b>



○ **시책1**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**제23조**

-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
-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,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
- 기업의 혁신 촉진 및 지속가능 경영활동(경제적 수익성, 사회적 책임성, 환경적 건전성) 지원
- 차별 철폐, 소득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·임금·사회보장에 관한 시책 추진
- 자원생산성 제고(자원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)를 위한 조세 및 금융제도 개편
- 자연환경자산 및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·복원·이용, 지역의 사회적 가치 존중
- 사회기반시설(교통·도로·항만·상하수도·녹지 등)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

○ **시책2** 포용적 사회 구현 **제24조**

-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
- 빈곤층·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
-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,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
-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, 보편적 의료 보장 강화
- 교육 접근성 보장,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
-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
-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

○ **시책3** 생태·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**제25조**

-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, 물 부족,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
- 친환경 에너지 보급, 합리적·효율적 에너지 이용,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
- 지구 온도 상승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,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
-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
- 육상생태계의 보전·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
-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·증진

○ **시책4** 이해관계자 협력 **제26조**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
- 법치 증진, 정의(사법제도)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제공, 폭력·부정부패를 예방, 인권 존중
-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조직·활동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, 기술협력 및 표준화, 공동조사·연구 등 국제협력 도모
-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



## 4 지속가능성 평가

- **지속가능발전지표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의 **‘지속가능발전지표’** 개발·보급
- **지속가능성 평가**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**지속가능성 평가**
- **지속가능발전 보고서** 국가위원회는 **2년마다**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**‘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’** 작성 및 대통령 보고 후 공표
  -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**‘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’**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후 공표

## 5 보칙

- **정보 보급**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지식·정보 보급
  -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·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**‘지속가능발전정보망’** 구축·운영
  -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 구축·운영 및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**‘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’** 지정·운영
- **교육·홍보**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·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
- **국민의견 수렴**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**‘숙의공론화장’** 마련
- **기타**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·정책 동향 및 정보를 수집·조사·분석하여 **국제규범 대응** 등

### Ⅲ. 시사점: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연계



**세부목표 3-7** 유해화학물질, 대기, 물,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.

- ▷ 온열환자 리포팅 및 예방사업(온열환자 응급실감시체계,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·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) 확대를 위한 **기상정보 전달체계 고도화**

**세부목표 7-2**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.

- ▷ 인공지능을 활용한 **에너지 수요·공급 관리 고도화**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**맞춤형 기상정보**를 제공하는 기업·기술 발굴

**세부목표 9-2**

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.

- ▷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**기상·기후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제고 및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집중 육성**

**세부목표 13-1**

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,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.

- ▷ **기후변화 감시정보 다원화 및 예측모델 개발**을 통해 **기후변화 관측·감시·예측 역량을 강화**함으로써 기후 불확실성 대응

**세부목표 13-3**

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.

- ▷ **기후변화 교육 강화 지원**(교재 개발, 체험 확대 등) 및 세대별·지역별 **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**을 통한 **기후변화·탈탄소 인식 제고**

#### 참고자료

- ▷ 한국환경연구원 「KEI 포커스」, 「대전환의 시대: 지속가능사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」 ('22. 5. 15.)
- ▷ 한국소비자원 「소비자정책동향 제119호」,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소비자정책적 시사점」 ('22. 2. 28.)
- ▷ 환경부, 「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21~2040)」 ('21. 2. 16.)
- ▷ 환경부, 「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(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」 ('19. 4. 24.)





**문의**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정책연구실 / 070-5003-5215 / [policy@kmiti.or.kr](mailto:policy@kmiti.or.kr)